

안양시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

제정 2014. 11. 14 조례 제2573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안양시의 주요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주요 공공시설물(이하 “공공시설물”이라 한다)”이란 안양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가 설치·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을 말하며, 그 범위는 [별표] 와 같다.

제3조(관리 의무) ① 안양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공공시설물이 제 기능을 하도록 성실히 보호·관리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시설물을 훼손한 사람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하고, 훼손에 따른 복구비용을 징수하여야 한다.

제4조(신고 및 처리) ① 공공시설물의 훼손자 등에 대한 신고는 방문, 우편, 전화,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하고 조치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하며, [별지 제1호서식] 의 대장에 기록·관리 하여야 한다.

제5조(포상금 지급대상 등) ① 신고포상금(이하 “포상금”이라 한다)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공공시설물의 훼손자를 신고한 사람

2. 공공시설물의 훼손자를 규명하는데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

② 같은 건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대상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지급한다.
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
1. 시 소속 공무원 및 경찰·소방공무원이 신고한 경우

2. 해당 시설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업체 직원이 신고한 경우

3. 훼손 관련 사건·사고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신고한 경우

- 4. 훼손자를 관련 공무원이 이미 알고 있거나, 같은 건이 신고 접수된 경우
- 5. 익명 또는 타인 명의로 신고하거나 포상금 수령을 원하지 않을 경우
- 6.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·부당하게 신고한 경우

제6조(포상금 지급기준 및 한도)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훼손된 공공시설물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10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.

② 포상금은 훼손자에 의해 원상회복 또는 비용납부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. 다만, 훼손자의 비용납부가 지연될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우선 포상금을 지급한다.

③ 포상금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포상금을 개인별로 건당 100만원,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.

④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은 [별지 제2호서식]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⑤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[별지 제3호서식]의 포상금 지급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제7조(포상금의 환수)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지급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이를 지방세 부과·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.

제8조(신고자 보호) 시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,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주요 공공시설물의 범위(제2조 관련)

구 분	시 설 물
1. 도로 및 인도	가. 차량진입 방지 시설(경계석 등) 나. 도로표지판 및 가로등 관련 시설 다. 육교 라. 맨홀 마. 벤치, 미디어폴 등 주민편익 시설 바. 가로변 휴지통 등 사. 빗물받이 등 하수시설
2. 교 통	가. 블라드 등 차량진입 방지 시설 나. 교통 관련 표지판 다. 교통 신호기 등 라. 시내버스·택시 승강장 관련 시설 마. 자전거 보관대 등 관련 시설물
3. 공 원	가. 가로수 등 각종 수목 및 보호대 나. 벤치 다. 음용수대 라. 공중화장실 마. 체육시설물 등
4. 그 밖에 안양시 예산으로 구입 설치한 조형물 등 공공시설물	

[별지 제2호서식]

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				
신 청 인	성 명		생년월일	
	주 소	(전화번호)		
	거래은행		계좌번호	
신고사항	신 고 일	년 월 일 시 분		
	신고기관			
	피신고인	성명 또는 업소명		
		주소 또는 위치		
	신고내용			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위와 같이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신청인 : (서명 또는 인)</p> <p>안양시장 귀하</p>				
<p>※ 구비서류</p> <p>1. 공공시설물 훼손관련 증빙자료 1부</p>				

